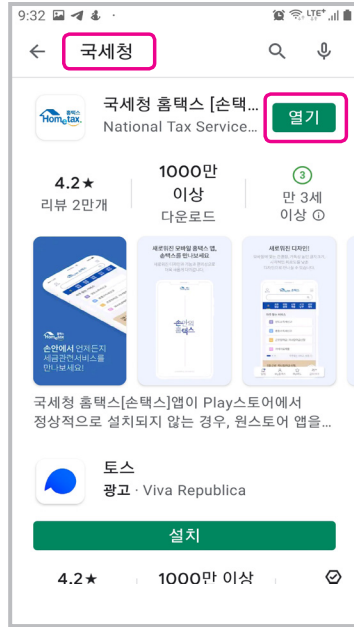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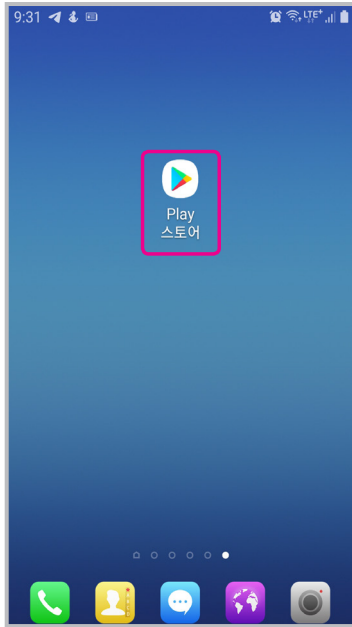


단순경비율 스마트폰 신고



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내려 받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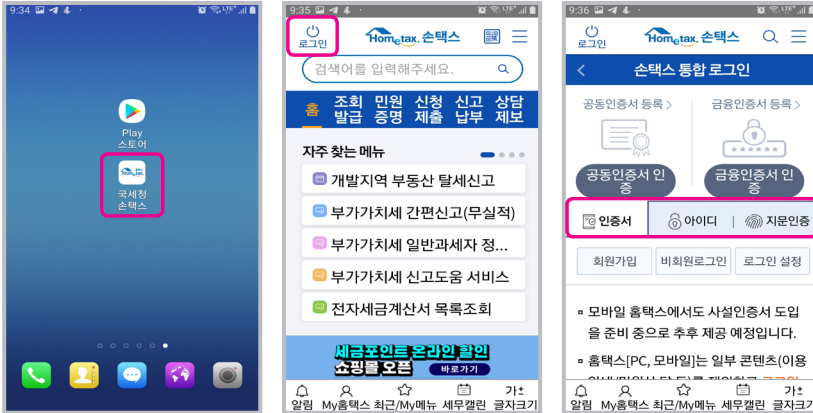
-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적용 신고자를 위한 **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**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
-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원 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-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**국세청** 모바일을 검색합니다.



- 검색된 「**국세청 홈택스**」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합니다.

2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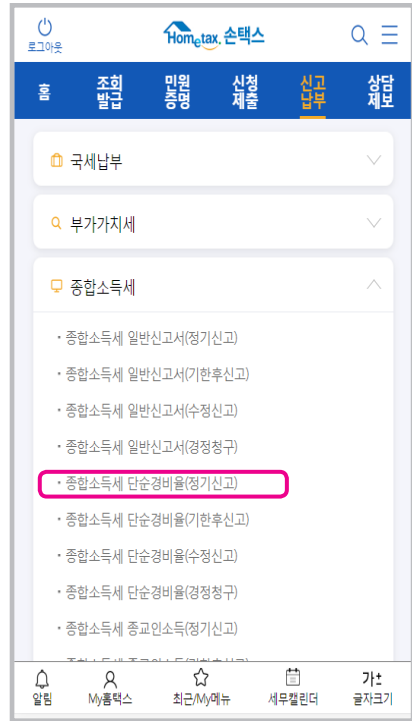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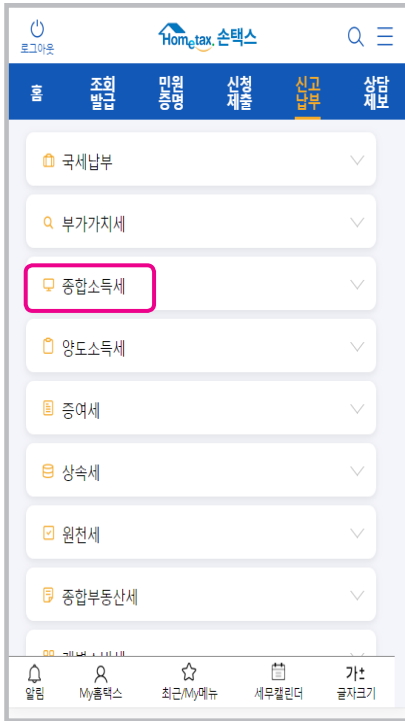
- 로그인 방식은 공동·금융인증서 인증, 아이디/패스워드, 지문인증의 방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- 회원이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[회원가입] 버튼을 클릭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됩니다.
-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[신고납부]를 클릭합니다.



3 전자신고서 작성하기



- [종합소득세]를 클릭한 후에 **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(정기신고)**를 선택합니다.
-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,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안내유형이 F, G, V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합니다.

The screenshot shows the 'HomeTax' app interface for filing a tax report. The title is '단순경비율 정기신고' (Simple Rate Regular Report). The current step is '1 기본사항' (Basic Information). The '기본정보 입력' (Basic Information Input) section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:

- 개인단체** (Individual/Entity): '개인' (Individual) is selected. A note says: '개인 또는 단체(중증)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.' (Select when reporting for an individual or entity (severe)).
- 귀속년도** (Fiscal Year): 2020
- 납세자번호** (Taxpayer ID): Masked with dots. A red box highlights the '조회' (Search) button next to it.
- 성명** (Name): Masked with '테***'.
- 주소** (Address):
 - 도로명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*****
 - 지번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*****
- 전화번호 (주소지)** (Address Phone): Three input fields.
- 전화번호 (사업장)** (Business Phone): Three input fields.
- 휴대전화** (Mobile Phone): 010, 111, 1111
- 이메일** (Email): Input field with a dropdown for domain selection.
- 내외국인** (Domestic/Foreign): 내국인 (Domestic)
- 거주구분** (Residence Type): 거주자 (Resident)
- 거주지국** (Residence Country): KR (대한민국)
- 신고유형** (Report Type): 32. 단순경비율
- 기장의무** (Tax Obligation): 02. 간편장부대상자 (Red box highlights this field)
- 신고구분** (Report Category): 01. 정기신고
- 장애인 여부** (Disability Status): 여 (Yes) / 부 (No)

A red box highlights the '저장 후 다음' (Save and Next)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orm. A note at the bottom states: '※ 비장애인이 '여'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' (If a non-disabled person selects 'Yes', additional tax may be levied.)

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

- 납세자 번호 항목에 [조회]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.
-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전화, 사업장전화,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 하며,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.
- 기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나타납니다.
- 조회된 내용을 확인 한 후 [저장 후 다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로그아웃 HomeTax 스텍스

단순경비율 정기신고

1 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3

사업장소득 명세

[입력] 또는 [추가입력] 버튼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업종코드를 입력하기 위하여 눌러 주십시오.
[선택수정] 버튼은 선택된 사업장소득 수입금액을 입력 및 수정하기 위하여 눌러 주십시오.

(단위 : 원)

<input type="checkbox"/>	사업자등록번호	주업종코드	상호	소득구분	단순경비율 (일반율(%))	단순경비율 (자가율(%))	수입금액	필요경비	소득금액
<input type="checkbox"/>	000-00-00000	940903		40	61.70	46.40	50,000.00 0	29,320.00 0	20,680.00 0

선택삭제 선택수정 추가입력

연금소득·기타소득 명세

(단위 : 원)

<input type="checkbox"/>	소득구분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상호 (성명)	총수입금액 (총연금액)	필요경비 (연금소득공제)	소득금액	원천징수세액 소득세
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.							

선택삭제 선택수정 입력

종합소득세액의 계산

13 종합소득금액 20,680,000 원
00 사업장소득 명세와 연금소득·기타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직입합니다.

14 소득공제 1,500,000 원
00 (15) ~ (26)의 공제금액 합계를 직입합니다.

인적공제 명세

관계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성명
소득자 본인	*****-*****	김***

수정

일련 My홈택스 최근/My메뉴 세무달린더 가산 공제하기

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.

- 신고서의 사업장소득명세는 다수 건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.
- 사업장소득 명세 목록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[선택수정]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소득 명세를 추가하려면 [입력] 또는 [추가입력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- 사업장소득 입력 화면이 나타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**[있음]**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,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**[없음]**을 선택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**[등록하기]**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소득 명세 목록에 내용이 추가 됩니다.

- 사업장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한 사업장을 체크하고 **[추가입력]** 버튼을 클릭 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화면이 나타나고 **[입력]** 버튼을 클릭하여 총수입금액 란에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되어 나타납니다.
- **[등록]**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세액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.
- **[입력완료]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다시 사업장정보 화면으로 돌아오면 사업장소득 명세 목록에서 삭제할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**[선택삭제]**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

- 아래에 연금소득, 기타소득 명세화면이 보여지며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**[입력]**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.

- 소득의 지급자 **사업자등록번호**를 입력하고, **[조회버튼]**을 클릭한 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, 원천징수 소득세 내용을 입력하고, **[등록하기]** 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이 추가됩니다.
- 연금소득, 기타소득 명세에서 선택 후 **[선택수정 또는 삭제]**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/삭제도 가능합니다.

- 아래로 드래그하면 사업장소득명세 목록에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금액과 연금소득, 기타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

- 인적공제명세 목록에서 새로 인적공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[수정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- 새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**주민등록 번호를 입력**하고 [조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관계,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한 후 [등록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 추가되고, 추가된 명세를 선택 후 [삭제/수정]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.
- 인적공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후 [입력완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22	기부금(이월분) 소득공제	0 원	※ 2013년 귀속분까지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.
23	연금보험료공제	0 원	※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.
24	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	0 원	
25	개인연금저축공제	0 원	※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%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26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0 원	
27	과세표준	3,500,000 원	※ (13) - (14) ('0'보다 적은 경우에는 '0'으로 합니다.)
28	세율	6 %	
29	산출세액	210,000 원	※ (27) × (28) - 누진공제액
30	세액공제	90,000 원	※ 세액공제명세 (31) ~ (37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
-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드래그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, 국민연금보험료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.

연금소득·기타소득 명세	단위: 원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구분	사망자등분별보 (국민연금보)	상표 (성명)	출수입금액 (총 연금액)	필요경비 (연금소득공제)	소득금액	환급할수세액 소득세
<input type="checkbox"/>	60		4,000,000	0	4,000,000	0
<input type="button" value="표 선택삭제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공 선택수정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단 추가입력"/>						
종합소득세액의 계산						
① 종합소득금액						16,100,000 원
※ 사망소득 용해와 연금소득·기타소득 용세의 소득공제 합계 ※ 적용입니다.						
② 소득공제						1,500,000 원
※ 기11 - 02의 공제금액 합계 ※ 적용입니다.						

- 화면을 위로 드래그하면,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소득공제 합계액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.

26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0 원	
27	과세표준	3,500,000 원	※ (13) - (14) ('0'보다 적은 경우에는 '0'으로 합니다.)
28	세율	6 %	
29	산출세액	210,000 원	※ (27) × (28) - 누진공제액
30	세액공제	90,000 원	※ 세액공제명세 (31) ~ (37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
- 다시 아래로 드래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 후 세액공제명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.

세액공제명세

31-1)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

인원		0 명
금액		0 원

* 2명 이하 : 1명당 15만원, 자녀 2명 초과 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

31-2) 출산입양 세액공제

첫째
 둘째
 셋째이상
 0 명

인원		0 명
금액		0 원

* 공제금액은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.

32)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하기

과학기술인공제 대상금액		0 원
과학기술인공제 금액		0 원

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

도움말

지출금액 입력

50세 이상 여부	여	부
① 과학기술인공제		0 원
② 퇴직연금		0 원
③ 연금저축		0 원
④ 소계(①+②+③)		0 원
공제대상금액		0 원
세액공제액		0 원

계산

닫기

적용

- 자녀공제 대상 인원을 입력합니다.
- 연금계좌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**[계산하기]** 버튼을 클릭 후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여 **[계산]**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, **[적용]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
33 기부금세액공제
조정명세서
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	0 원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금액	0 원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	0 원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금액	0 원
우리사주조합공제 대상금액	0 원
우리사주조합공제 금액	0 원

00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

기부금 조정명세서 내역
(단위 : 원)

선택	기부유형	기부연도	기부금액	전년까지 공제된 금액	공제대상금액	해당연도 필요경비	해당연도 소득공제	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	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소멸금액	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이월금액
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.										

선택삭제
선택수정
입력

기부금 한도액 및 공제대상금액

종합소득금액	5,000,000원
--------	------------

-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.

*기부유형	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 41
*기부연도	2020
13 기부금 합계금액	500,000 원
*14 공제대상 기부금액	500,000 원
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	0 원
16 기타 기부금	0 원
*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	0 원
18 공제대상금액	500,000 원
04 (18) = (14) - (17)	
해당연도	
* 필요경비	0 원
* 소득공제	0 원

- 기부유형, 기부연도, 기부금액 등을 입력한 후, 공제대상금액 중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.

기부금 조정명세서 내역 (단위 : 원)

선택	기부유형	기부연도	기부금액	전년가지 공제된 금액	공제대상금액	해당연도 필요경비	해당연도 소득공제	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	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소멸금액	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이월금액
1 <input type="checkbox"/>	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	2020	500,000	0	500,000	0	0	500,000	0	0

기부금 한도액 및 공제대상금액

종합소득금액	5,000,000원
--------	------------

공제대상금액 (단위 : 원)

구분	필요경비	소득공제	세액공제
정지자금 10만원 이하			0
정지자금 10만원 초과	0		0
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(이월)	0	0	0
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(당해)	0		0
우리사주조합기부금	0	0	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(이월)	0	0	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(당해)	0		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(이월)	0	0	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(당해)	0		500,000

기부금 한도액 (단위 : 원)

구분	필요경비	소득·세액 공제
정지자금 10만원 이하		
정지자금 10만원 초과	0	5,000,000
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(이월)		5,000,000
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(당해)		5,000,000
우리사주조합기부금	0	1,500,00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(이월)		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 외)(당해)		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(이월)	0	500,000
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(종교단체)(당해)		

작성완료

- 기부금의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**[작성완료]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
기부금세액공제		조정명세서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	0 원	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금액	0 원	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	500,000 원	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금액	75,000 원	
우리사주조합공제 대상금액	0 원	
우리사주조합공제 금액	0 원	

※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

- 기부금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
35	납세조합공제	0 원	※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전합니다.
36	전자신고세액공제	20,000 원	
37	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		
	정치자금기부금공제 대상금액	0 원	
	정치자금기부금공제 금액	0 원	
	※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/110을 세액공제합니다.		
38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	0 원	
39	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	0 원	※ 산출세액의 30%(중소기업은 60%) ※ 한도 : 2억원(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)
40	결정세액	1,707,000 원	※ (29) - (30) - (38) - (39) ('0'보다 적은 경우에는 '0'으로 합니다.)
41	가산세액	0 원	※ 가산세액 명세(42) ~ (50)의 합계 금액을 전합니다.

-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.
-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, 가산세액 계산명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

가산세액 계산명세

※ '19년 귀속 납부기한은 8.31 이므로 20.8.31까지 수정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님 신고가산세 요약설명

42 부정무신고 납입금액계산기

무신고납부세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40/100(60/100)		
수입금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수입금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14/10,000		

42 일반무신고 납입금액계산기

무신고납부세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무신고납부세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20/100		
수입금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수입금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7/10,000		

43 부정과소신고

과소신고납부세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원금영수증 미발급

미발급금액 기준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20/100(10/100)		
미발급금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
5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

미등록기간 수입금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※ 가산세율 : 2/1,000		
미등록기간 수입금액 가산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원

51 총결정세액 45,000 원

※ (40) + (41)

52 중간예납세액 0 원

53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원천징수세액입력

원천징수세액	<input type="text" value="500,000"/>	원
※ 원천(납세조합)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과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원합니다.		

5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-455,000 원

※ (51) + (52) + (53)

- 아래로 드래그하여 총결정세액,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합니다.
-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원천징수 세액 입력 팝업창을 제공하여 다수 건의 입력이 가능합니다.
-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.

④ 안내

-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(?)
-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환급계좌신고

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(CMA를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)

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신청여부 검토후 6월말~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회사명

계좌번호

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④ 유의사항

- 폴릭스 전자신고 시, 신고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조회 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,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전

-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“**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**”에 체크합니다.
-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신고 화면에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회사명을 선택,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
-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아래에 **[신고서 작성완료]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
로그아웃 Home tax. 손택스 < > 단순경비율 정기신고

1 2 3 신고서제출

단순경비율 추가신고서 내용 요약

○ 기본정보

소득자	서***(*****_*****)
귀속년도	2020
신고유형	정기신고(32,단순경비율)
종합소득금액	5,000,000원

○ 과세표준

종합소득세	3,500,00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○ 산출세액

종합소득세	210,00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○ 납부(환급)할 총 세액

종합소득세	-455,00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○ 납부특례세액

자감 종합소득세	0 원
가산 종합소득세	0 원

○ 분납할 세액(2개월 이내)

납부(환급)할 세액이 맞으면
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.

☞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31일입니다. 신고서 제출 후, 점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(코로나19로 직권연장)

☞ 지방소득세도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제공 동의

□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, 환급 계좌번호,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제(위택스)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예 동의합니다.
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이전 **신고서 제출**

- 단순경비율 정기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, **[개인정보 제공동의]**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**[신고서 제출하기]**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, **[개인정보 제공]**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	
사용자 ID	n206_124938
사용자명	서****
접수번호	124-2021-2-600000789402
접수일시	2021-04-08 21:10:02
접수결과	정상
제출내역	
상호(성명)	서****
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*****
신고서종류	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
접수방법	모바일
첨부한서류	0종
신고구분	정기(확정) / 정기신고
 국세정홍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	
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,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.
-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,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직접 납부하실 경우에는 [\[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\]](#)에 동봉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하단에 「상세내역」을 확인하시고 [작성 확인하였습니다]를 체크한 후에, [신고내역]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, 납부서,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을 클릭하여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, 위택스,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.